



The Board Bulletin

2020 년도 봄 연금국 소식

미국 장로교 연금국은 매 정기 이사회 회의가 끝난 후 연금국 소식(Board Bulletin)을 발행합니다. 연금국 소식은 주요 회의 정보뿐 아니라 연금국에서 관장하는 플랜 및 프로그램에 관한 결정을 알려드립니다.

연금국 이사회는 2017 년의 플랜 재설계 이후 미국 장로교 혜택 플랜에 있어 가장 큰 규모의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변경 사항은 2021 년 1 월 1 일부터 적용됩니다.](#)

지속적이고 강력한 재정 책임에 대한 연금국 리더십으로 연금 부담금을 절감하고, 목회자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혜택과 기타 지원을 연장하며, 새로운 장애 보증을 통해 재정 보호를 강화하고, 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아직 많은 목회자들이 연금국 혜택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목회에 최고의 재능을 바칠 수 있도록 고안된 연금국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 장로교의 모든 목회자와 직원 그리고 관련 기관이 복지 지원을 위한 양질의 혜택에 접근해야 한다는 연금국의 목표에도 부합합니다.

연금 부담금 감액

연금 부담금을 실제 급여의 11%에서 8.5%로 감액하나, 연금 혜택의 감소나 변경은 없습니다. 연금 부담금 감액은 연금국 역사상 처음이며, 이는 여러 세대동안 미국 장로교가 쌓아온 자산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반영한 것입니다.

목회자를 위해 새로 승인된 혜택 패키지

2021 년에는 미국 장로교 목회자를 위한 두 가지 혜택 패키지가 제공됩니다; 1. 위임 목회자들을 위한 Pastor's Participation Plan (새로운 단기 장애 보험 포함), 2. 비위임 목회자들을 위한 새로운 패키지, [Minister's Choice](#).

새로운 패키지인 Minister's Choice 에는 새로운 단기 장애 보험 및 고용인 보조 프로그램 (Employee Assistance Program), 연금 및 사망/장애 보험이 포함됩니다. 이 패키지의 비용은 실제 급여의 10%이며, 교회/고용기관이 부담금 전체를 지불해야 합니다. 비위임직책을 일주일에 최소 20 시간 이상 사역하는 목회자들은 이 패키지에 가입 자격이 됩니다. 교회/고용기관은 추가로 선택 보험을 같이 제공할 수 있으며, 비용 부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Minister's Choice 는 중요한 재정적 보호를 제공하고, Pastor's Participation Plan 를 통해서만 제공했던 다음과 같은 보조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제공합니다; CREDO, Healthy Pastors Healthy Congregations, Minister Educational Debt Assistance, Sabbatical Support. 또한 Emergency Assistance, Adoption Assistance 및 Transition-to-College 보조 프로그램 자격도 제공합니다.

Pastor's Participation Plan 부담금 4 년째 37% 유지

2021 년 Pastor's Participation Plan 부담금은 실제 급여의 37%로 유지될 것입니다; 의료 보험 27%, 연금 8.5%, 사망 및 장애 보험 1%, 새로운 혜택인 단기 장애 보험 0.5% 입니다. 4 년 연속으로 총 부담금을 37%로 변동없이 유지됩니다.

이사회는 교회가 의료 보험 부담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최대액을 연 33,500 달러로 올리고, 최소 부담금은 연 11,000 달러로 유지하기로 표결했습니다.

참고: Pastor's Participation Plan 를 통하지 않고 각 교회나 고용기관에 적용되었던 의료 보험 비용은 2021 년 7 월 중순부터 Benefits Connect 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 년 4 가지 재정 보호 프로그램

사망 및 장애 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포괄적인 보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사망 및 장애 보험은 Pastor's Participation Plan 및 Minister's Choice 을 통해 연금과 함께 제공되며, 두 가지 패키지 방법외에 비기여 기준(noncontributory basis)으로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는 두 가지 새로운 장애 보험을 승인했고, 교회와 고용 기관이 더 많은 목회자들과 직원들에게 중요한 재정적 보호를 하기 위해 새로운 장애보험과 Group Term Life 보험을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기 장애가 발생할 경우, 새로운 단기 장애보험은 가입자에게 실제 급여(2020 년 IRS 최고 급여 285,000 달러 제한)의 60%에 해당하는 재정적 보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보험은 14 일간의 Waiting Period 후에 최대 90 일까지 혜택이 지급됩니다. 단기 장애 보험은 Pastor's Participation Plan 과 Minister's Choice 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 패키지 외에도, 교회/고용 기관은 자격이 있는 목회자/직원에게 기여(contributory basis) 또는 비기여 기준(noncontributory basis)으로 이 단기 장애보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장기 장애 보험은 90 일 초과 장애에 해당하는 가입자들에게 재정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혜택이며, 장애 기간 동안 실제 급여(2020 년 IRS 최고 급여 285,000 달러로 제한)의 60%에 달하는 재정적 보호 혜택을 제공합니다. 사망 및 장애 플랜과 함께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회는 단기 및 장기 장애 보험이 제공하는 포괄적인 재정 보호를 승인하는 것 외에도 Term Life Plan 을 확대했습니다. Term Life Plan 는 2020 과 동일한 저비용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고정된 보험 보상 범위(\$5,000 에서 \$50,000 사이) 외에, 가입자 실제 급여의 1 배인 최대 \$50,000 의 소득 기반 혜택 금액인 새로운 보상 범위를 포함합니다. 두 가지 보상 옵션 중 어느 쪽이든, 교회/고용기관은 Term Life Plan 을 제공할 때 부담금을 100%지불해야 합니다.

보조 프로그램 자격 확대

이사회는 비위임목회자들을 위해 새로운 만든 패키지 Minister's Choice 외에도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도 확대했습니다(승인된 새로운 혜택 Mnister's Choice 참조). 의료 보험 또는 연금 가입자들도 입양 보조금(Adoption Assistance) 및 대학 입학 자녀를 위한 Transition to College 보조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Retiree Medical assistance 는 연금국 Medicare Supplemental Plan 가입한 은퇴자 및 자격이 있는 연금 수령자, 배우자 및 생존 배우자도 자격이 됩니다. 가구 소득과 같은 다른 모든 자격 요건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흑인계 교회를 위한 사역 지원 확대

연금국은 위임 목회자가 없는 흑인계 교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등록 교인수가 300 명 이하인 흑인계 교회에 Pathways to Renewal 프로그램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본래 Pathways to Renewal 프로그램은 등록교인이 150 이하인 교회를 대상으로 합니다. [Pathways to Renewal](#) 은 획기적으로 절감된 부담금으로 교회가 젊은 목회자에게 Pastor's Participation Plan 의 모든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포트폴리오 기간의 목표 수익 초과

부사장 겸 최고 투자 책임자인 Judith D. Freyer 는 세계 경제 및 정치 사건의 틀 안에서 연금국 균형 투자 포트폴리오를 발표했습니다. 모든 기간에서 목표 수익률 6%를 초과했습니다; 20 년 투자 이익 = 6.3%, 15 년 투자 이익 = 6.9%, 10 년 투자 이익 = 8.6%, 5 년 투자 이익 = 7.3%, 3 년 투자 이익 = 9.8%, 1 년 투자 이익 = 17.8%.

포트폴리오는 연금, 사망 및 장애 보험, 기부 기금 및 보조 프로그램 자산과 연금국에 주어진 기부금에 대한 투자 펀드입니다. 2019 년 12 월 31 일, 연금국 포트폴리오의 시장 가치는 \$10.2 billion 였습니다([2019 투자 검토를 참조하십시오](#)).

투자위원회 위원장 Suzanne P. Welsh 는 가입자 및 수혜자를 대신하여 투자위원회의 업무 개요를 제공했습니다. 2019 년 자산 책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IASB 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장기 전략적 자산 할당 범위를 승인했습니다.

위원회는 사모펀드 10%, 부동산 5%라는 초기 목표를 검토하고 승인했습니다. 위원회는 사모펀드 및 부동산에 대한 비유동 사기업 파트너십 투자와 국제 주식 관리자에 대한 추가 배분을 승인했습니다.

위원회는 미국 장로교 403(b)(9) 은퇴 저축 플랜 및 401(k) 신약 은퇴 저축 플랜에서 자산 배분, 투자 성과 및 투자 옵션의 비용을 검토했습니다. 위원회는 균형 투자 포트폴리오의 미국 및 국제 주식 구성 요소를 검토하고 신흥 시장 주식 전략을 승인했습니다.

경험 분배 (Experience Apportionment) 승인

이사회는 연금국 [경험 분배 정책 지침](#)에 따라 연금 플랜에 대해 2%의 경험 분배를 승인했습니다. 이 경험 분배 승인은 2019 년 말 기준 123.8%였던 연금의 전체 자금 상태를 고려했습니다. 정책 지침은 세 가지 목표를 지향합니다;

- 연금 장기 재무 안정성 보장
- 인플레이션으로부터 가입자 보호
- 세대 공평성 유지

이번 경험 분배는 2020 년 7 월 1 일에 지급되며, 금년을 포함해서 8 년 연속 경험분배로 총 26.4% 누적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경험 분배는 연금국이 균형있게 장기적으로 투자한 결과라는 것을 이사회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장애 보험 혜택 증액 승인

2019 년 12 월 31 일자로 장애 보험 혜택을 받는 가입자는 2020 년 7 월 1 일부터 2% 증가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증가는 장애 보험 혜택의 인플레이션 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회는 투자 및 보험 수리적 경험, 적립금 및 인플레이션을 검토한 후 혜택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망 및 장애 보험의 자산과 부채는 연금국의 다른 보험들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소 분배 연령 규정 수정안

이사회는 2019 년 12 월 20 일에 제정된 SECURE 법에 따라 미국 장로교 연금 혜택 및 은퇴 저축 플랜 (Retirement Savings Plan)에 적용되는 최소 분배(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연령을 수정했습니다. 새로운 법은 2019 년 12 월 31 일자로 70½세가 되지 않은 가입자를 위해 최소 분배 연령을 70½세에서 72 세로 연장했습니다.

내년 이사회 리더십 선출

이사회는 224 차 총회(2020 년)가 끝난 후 아래의 현재 임원들 중에서 1 년 임기의 이사를 선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Fredric J. Bold Jr., Chairperson

Larry Palmer, First Vice Chair

Suzanne P. Welsh, Second Vice Chair

Rev. Dr. Fairfax F. Fair 는 총회 종결까지 이사회 의장직을 계속 수행할 것입니다.

다음 이사회 회의는 2020 년 7 월 16-18 일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기업 비서](#)에게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215-587-7600 번으로 전화해 문의하십시오.